

#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75
----------	-----

2015년 7월 10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5년 4월 15일, 성중기 의원(찬성자 23명)
- 나. 회부일자 : 2015년 4월 1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15년 6월 25일 상정·의결(수정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성중기 의원)

### 가. 제안 이유

- 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및 기간이 정해지지 않음으로써 특정 위원의 위촉기간 과다로 공정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에 따라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및 기간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 내용

- 위촉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함(안 제3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,  
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(2015. 4. 17 ~ 2015. 4. 24) 결과 : 의견 없음.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자연지명 및 각종 시설물 명칭 제·개정 심의 (의결)·자문을 위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(1년)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조).
- ※ 지명위원회는 1981년 12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설치되었으며, 1985년부터 자연지명 및 도로, 지하철역, 공원 등의 각종 시설물의 명칭 제정·변경 등을 실질적으로 심의·결정하여 왔음.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	제3조(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- 입법 취지는 현행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특정위원의 장기간 위촉에 따른 공정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- 현재 ‘지명위원회’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, 위원장(행정제1부시장)·부위원장(행정국장)을 포함한 10인의 위원 중 외부위원은 8명으로, 지리(3명)·역사(2명)·국문학(1명)·환경(1명)·교통(1명) 분야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, 1년마다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5년 이상 장기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6명에 달함.

〈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위촉기간 현황 〉

연번	구 분	성 명	출생년도	최초위촉일 (총 위촉기간)	총 위촉기간
1	위촉위원	도○○	1943	'01.06.19	(14년 1월)
2	"	정○○	1942	'03.08.02	(11년 9월)
3	"	이○○	1937	'06.10.20	(8년 7월)
4	"	임○○	1948	'08.01.24	(7년 4월)
5	"	이○○	1952	'10.01.24	(5년 4월)
6	"	성○○	1955	'10.01.24	(5년 4월)
7	"	양○○	1955	'12.01.24	(3년 4월)
8	"	심○○	1970	'14.05.20	(1년 0월)

- 지명위원회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제1항에 따라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지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(2015. 6. 4 시행)  
 제91조(지명의 결정) ① 지명 및 해양지명의 제정, 변경과 그 밖에 지명 및 해양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며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  
 ⑥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※ 본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2015년 6월 4일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에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로 제명 변경
-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6조까지 지명위원회의 구성,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간사, 수당, 현장조사, 보고,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 세세히 규정하고 있으나,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음.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 
 제88조(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지명위원회는 **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**하고,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 ② 시·도 지명위원회의 **위원장은 행정부지사(특별시,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)가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**  
 ③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 
 ④ **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·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,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.**

○ 2006년 3월 외부위원들이 역사·지리 등 인문학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주민들의 현실적 요구와 이용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<sup>1)</sup>에 따라,

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시의적절하게 지명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외부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할 바 있음.

※ 2006년 동 조례 위원 임기 관련 개정 사항

▶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: 3년 → 1년 (2006.3.16. 개정·시행)

▶ 개정이유: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시의적절하게 동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.

○ 현재까지 2006년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여 전문분야의 인문학 치중 및 학문적·전문적 성향에 따라 지명이 결정되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,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시의적절한 위촉을 통한 주민의 입장 또는 이용자의 의사를 반영한 지명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외부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.

1) 당시 서울시의 「지명위원회 정비계획」(2005.11.18)에 따르면, 외부 민간위원 중 지리·역사·국문학 분야를 축소하고(6→3명), 환경·교통·토목 등 전문분야를 확충하는 한편(2→3명), 당연직 및 관계 공무원의 참석비율을 늘리고(2→4명), 외부위원의 임기를 축소(3→1년)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임(2006. 2. 16.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).

○ 본 개정안에 대해 집행부는 서울시 지명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 등이 결부되어 있는 지명(지하철역명, 공원명 등)을 심의·자문하게 되므로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의과정에 전문성·공정성을 담보하고 자문기준의 일관성 유지 등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이유로 현행과 같이 하거나, 3년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
※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을 1년, 2회로 제한 할 경우(최대 3년간 위원 활동 가능) 연 개최횟수가 2회 정도에 불과(최근 3년간 총 7회)한 상황에서 2회 연임을 해도 총 6~7회 참여하고 해촉하게 되어,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전문가를 배제해야 하는 문제 발생 및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.

○ 현재 중앙정부(임기 3년) 및 다른 광역 시·도(3년 임기: 12, 2년 임기: 3, 4년 임기: 1) 중 지명위원 임기에 연임제한을 두고 있는 곳은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2곳이나 1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음.

○ 결론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시각을 가진 외부위원들이 위촉되도록 함으로서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 수렴과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연임 제한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일정기간의 심의 기준 및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임기 연장의 필요성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한 위원의 임기와 연임 횟수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또한 본 조례안 개정의 경우 부칙에 기존 위촉 위원의 임기만료 후 임기연장 및 연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경과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※ 현 외부위원 위촉기간 : 2015. 5. 20 ~ 2016. 5. 19(1년)

※ 예) 제2조(경과조치)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〈경과조치를 두는 경우〉 현 위원 전원 내년 새로이 위촉된 후 조례 규정 적용

〈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경우〉 현 3년 이상 위촉 위원 해석 여하에 따라 신규 위촉이 안 될 소지 있음.

- 아울러 본 조례와 관련하여 근거 법령의 제명이 지난 6월 3일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되었는바, 본 조례 제1조 및 제4조의 관련 근거 법령 규정도 함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〈관련 법률 제·개정 연혁〉

□ 「측량법」 →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

○ 제정 2009. 6. 9, 시행 2009.12.10

○ 제정이유

- 「측량법」, 「지적법」, 「수로업무법」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여 국가지리정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

→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○ 개정 2015. 6. 3, 시행 2015. 6. 4

○ 개정이유

- 현행법은 공간 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, 제명을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려는 것임.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**

**6. 토론요지 : 없음.**

## **7. 수정안의 요지**

가. 수정이유

- 조례상 인용된 상위 법률 중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,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외부 위원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감안하여 위원 정수와 임기 및 연임횟수를 조정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“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” 을 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” 로 수정함(안 제1조 및 제4조).
- “10명” 을 “9명” 으로 수정함(안 제2조제1항).
- “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” 를 “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” 로 수정함(안 제3조).

**8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**(재석위원 7명, 전원찬성).

**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**

**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**



#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47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6월 25일  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조례상 인용된 상위 법률 중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,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외부 위원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감안하여 위원 정수와 임기 및 연임횟수를 조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안 제1조 및 제4조 중 “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”을 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”로 한다.
- 나. 안 제2조제1항 중 “10명”을 “9명”으로 한다.
- 다. 안 제3조 중 “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”를 “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”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수정한다.

안 제1조 및 제4조 중 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”을 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”로 하고,  
안 제2조제1항 중 “10명”을 “9명”으로 하며,  
안 제3조 중 “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”를 “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</u> 」 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현행과 같음)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</u> 」 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구성) 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1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	제2조(현행과 같음)	제2조(구성) 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9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제3조(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<u>1년으로</u> 하며 연임할 수 있다.	제3조(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<u>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	제3조(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<u>2년으로</u> 하며 <u>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「 <u>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</u>	제4조(현행과 같음)	제4조(기능) 위원회는 「 <u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</u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「<u>에 관한 법률</u>」 제9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		<p>「<u>에 관한 법률</u>」 제9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

#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4조 중 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”을 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10명”을 “9명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”를 “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</u>」 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1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(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<u>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「<u>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</u>」 제9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<u>9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(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<u>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「<u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9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